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기상 예측 및 대응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(연구사 1명)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을 위한 첨단농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(7급 1명, 연구사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 직위를 복수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28. ~ 2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4급·연구직”을 “3급 또는 4급, 연구직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889”를 “89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89”를 “892”로 하며,
3급 또는 4급 이하 “871”을 “87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대변인) ① 대변인은 <u>4급 · 연구직</u>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② (생 략)	제6조(대변인) ① ----- <u>3급 또 는 4급, 연구직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89</u>	<u>892</u>	+3
일반직 계	<u>889</u>	<u>892</u>	+3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71</u>	<u>874</u>	+3
•	•	•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4